별첨2 **화재안전조사 안내문**

경기도

- 소방계획서 작성·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-

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전 안내문

고양소방서에서는 화재시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(화재안전조사)에 따라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·유지 관리 여부, 화재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'화재안전조사'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. 귀 대상에 화재안전조사팀 방문 시 조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실시하게 되는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양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(☎ 031-931-0344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◇

□ **착안사항**

- **(조사일정)** 사전 협의(오전 / 오후)
- **(사전준비) - 이하 문서 중 해당부분**
  - 소방계획서, 자체점검보고서, 자격수첩, 완비증명서, 위험물허가서류 등
  - 건축물 관련 서류, 이용자 특성 및 주변 여건 사전 파악 등

□ **조사내용(소방계획서의 작성, 운영실태 점검 등)**

- **소방계획서 작성, 운영실태의 적정성**
  - **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)에 따른 사항의 준수여부**
- **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의 적정성**

2024. 4. 30.

고 양 소 방 서 장 고양소방서장의인

◇

□ **관련법령**
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)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(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)

□ **대행 가능 업무의 범위**

-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
-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

※ 대행가능 업무의 범위는 시설의 유지관리 분야에 한하며, 그 외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고유의 업무의 경우 대행 불가

□ **관리업체 대행 불가능 업무**

- **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**
- **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, 운영 및 교육**
- **소방훈련 및 교육**
- **화기 취급의 감독**
- **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·유지**
- **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**

1. 소방계획서의 작성, 유지관리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」

-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사항의 수시보완 여부 등
-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매년 소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.
-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피난계획 수립, 운영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」

- 근무자, 거주자, 출입자가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
- 피난시설 위치, 피난경로,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수립 및 거주자에게 제공방법 등 수립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계획의 수립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,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함
- 피난 유도 안내정보 미제공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3. 교육·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」

- 관계인은 소화·통보·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함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며, 특급,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소방훈련·교육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또한 실시
- 소방교육·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.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」

- 관계인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편성 및 운영하여야함
-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미구성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◇

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

(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)

1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・구조・연면적(「건축법 시행령」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・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
2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, 방화시설, 전기시설,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
3.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
4. 소방시설・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・정비계획
5.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,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
6. 방화구획, 제연구획(除煙區劃),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・관리계획
7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8. 소방훈련・교육에 관한 계획
9.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(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10.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11.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
12. 위험물의 저장・취급에 관한 사항(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)
13.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14.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,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
15.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・구조・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